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제출자 : 평창군수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안 번호	36

제출년월일 : 2022. 5. 3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Ⅰ. 제안이유

2021회계연도 결산을「지방자치법」제150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결산개요 :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정보 “별첨”

2. 세입·세출결산

가.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비율 ㉱/㉰	세출결산액 ㉲	비율 ㉲/㉰	잉여금 ㉳=㉱-㉲	비율 ㉳/㉰
합 계	630,589	109,745	740,334	751,465	101.5	589,868	79.7	161,597	21.8
일반회계	571,103	92,254	663,357	674,387	101.7	526,776	79.4	147,611	22.3
특별회계	59,486	17,491	76,977	77,078	100.1	63,092	82	13,986	18.2

나.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	비율(%) ㉲/㉰	비율(%) ㉲/㉱
합 계	630,589	109,745	740,334	756,829	751,465	866	4,498	101.5	99.3
일반회계	571,103	92,254	663,357	679,234	674,387	866	3,981	101.7	99.3
특별회계	59,486	17,491	76,977	77,595	77,078	0	517	100.1	99.3

다. 세출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
합 계	**630,589**	**109,745**	**740,334**	**589,868**	**125,437**	**6,253**	**18,776**
일반회계	571,103	92,254	663,357	526,776	113,300	5,821	17,460
특별회계	59,486	17,491	76,977	63,092	12,137	432	1,316

라.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161,597**	**125,437**	**78,351**	**15,203**	**31,883**	**6,422**	**29,738**
일반회계	147,611	113,300	73,248	15,095	24,957	5,990	28,321
특별회계	13,986	12,137	5,103	108	6,926	432	1,417

마.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26건 590백만원

○ 예산이체 : 4건 3,691백만원

바. 예비비 지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2,171	1,566	1,260	17	289

3. 기금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15,798	△1510	1,973	3,483	14,288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6,260	△815	58	873	5,445
평 창 군 체 육 진 흥 기 금	4,282	△795	41	836	3,487
평 창 군 식 품 진 흥 기 금	126	17	48	31	143
평 창 군 재 난 관 리 기 금	1,452	△659	1,024	1,683	793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04	26	26	0	130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574	716	716	0	4,290
평 창 군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0	0	60	60	0

4. 재무제표

(단위:백만원)

구분 / 회계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일반회계	3,091,071	63,775	3,027,296	395,530	531,933	(136,403)
기타특별회계	233,136	1,580	231,556	24,498	26,072	(1,574)
기금회계	15,606	5,351	10,255	2,687	1,955	732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76,988	2	276,986	18,498	7,303	11,195
내부거래	(156,153)	(10,634)	(145,519)	(15,340)	(15,340)	0
합 계	**3,460,648**	**60,074**	**3,400,574**	**425,873**	**551,923**	**(126,050)**

5. 성과보고서

(단위: 개)

실국별	성과목표						비고
	전략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목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2	75	149	18	73	58	
기획실	1	2	8	1	5	2	
행정과	1	4	8	1	3	4	
행정지원국	7	24	45	4	18	23	
경제건설국	9	32	62	9	31	22	
보건의료원	1	4	5	1	3	1	
농업기술센터	1	6	14	1	9	4	
의회사무과	1	1	1	0	1	0	
상하수도사업소	1	2	6	1	3	2	
읍면사무소	0	0	0	0	0	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